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 | 새통일희망나눔재단

수 신 : 통일부장관

(경 유) (정착지원과장)

제 목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통일희망나눔재단은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통일과 소외계층등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과 연구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3. 본재단은 통일부 정착지원과-934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자료를 작성 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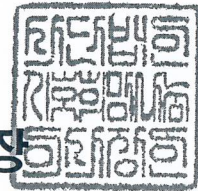
가. 기 관 명 : (사)통일희망나눔재단

나. 해당자료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끝.

(사)통일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담당: 한재형

상임이사 김현진

이사장 김태욱

협조자

시행 희망나눔 2018-2

(2018.03.30.)

접수

전화 (02)2141-1233

전송 (02)512-0080

hjjin@seeho.co.kr

/공개

우 135-958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702, 8층 TEL:02-2141-1255/FAX:02-512-0080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통일희망나눔재단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82-18746
③ 대표자 성명	김태욱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http://www.seehonanum.or.kr	⑥ 사업연도	2017년도
⑦ 전화번호	02-2141-1233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8.4
⑨ 소재지	서울시 청담동 영동대로 702, 8층		

###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2,776,530	8월	2,045,060	2,017,440	92,485,078
1월	3,383,840	8,377,051	7,783,319	9월	205,060	265,360	92,424,778
2월	51,720,000	5,113,355	54,389,964	10월	205,060	2,394,190	90,235,648
3월	2,085,000	2,472,677	54,002,287	11월	205,060	2,627,590	87,813,118
4월	2,371,080	1,781,920	54,591,447	12월	268,658	1,879,640	86,202,136
5월	1,139,440	20,398,060	54,672,827	합계	127,727,169	54,301,563	
6월	59,798,851	2,764,340	92,367,338	차기이월	-	-	86,202,136
7월	4,300,060	4,209,940	92,457,458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1월	통일리더 청소년 시력보전사업외	148	강서복지관, 하나원외	3,590,000
2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05	하나원	1,720,000
3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96	하나원	2,085,000
4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97	하나원	1,688,000
5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78	하나원	915,000
6월	통일희망 나눔음악회 개최, 안경지원	481	새터민, 하나원	21,933,000
7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85	하나원	4,095,000
8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02	하나원	1,840,000
9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21	하나원	2,405,000
10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83	하나원	1,190,000
11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99	하나원	1,320,000
12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05	하나원	1,765,000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17년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337	하나원	24,556,000
	통일리더 청소년 시력보전사업	13	강서복지관 외	650,000
	통일희망 나눔음악회 개최	350	새터민	19,340,000
	홍보물외	-	-	468,600
	일반관리비(인건비/홈페이지 운영비 등)	-	인건비,보험료외	9,286,963
합 계				54,301,563

###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⑳ 지출월	㉑ 국가명	㉒ 지급목적	㉓ 지급건수	㉔ 대표 지급처명	㉕ 금액
㉖ 연도별	㉗ 국가명	㉘ 지급목적	㉙ 수혜인원	㉚ 대표 지급처명	㉛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18년 3월  
제출인: 사단법인 통일희망나눔재단



국세청장 귀하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사)통일희망나눔재단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82-18746
③ 대표자 성명	김태욱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8.4
⑤ 소재지	서울 청담동 영동대로 702 8층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seehon anum.or.kr

###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재단은 기부금 및 기부물품 전액을 탈북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였음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재단 정관 제 37조(법인해산)에 규정하고있음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본재단의홈페이지 (http://www.seehon anum.or.kr)에 내역을 공개하였음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재단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않음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재단은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사업에 지출하였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2018년 3월 30

제출인 : 사단법인 통일희망나눔재단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